

# ORIGIN CASE

Vol. 5



- Case 1 일체형 냉장-냉동고 (제8418.10호)
- Case 2 팬 블로어 어셈블리 (제8414.59호)
- Case 3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제7610.90호)
- Case 4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제7324.10호)
- Case 5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제8708.29호)
- Case 6 절임 마늘 (제2005.99호)
- Case 7 합금강판 (제7226.91호)
- Case 8 호스 클램프 (제7326.90호)
- Case 9 화분 받침용 이동대 (제9403.20호)
- Case 10 배추김치 (제2005.99호)



한국원산지정보원



# CONTENTS

Case 1.	일체형 냉장·냉동고 (제8418.10호)	1
Case 2.	팬 블로어 어셈블리 (제8414.59호)	7
Case 3.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제7610.90호)	12
Case 4.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제7324.10호)	16
Case 5.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제8708.29호)	21
Case 6.	절임 마늘 (제2005.99호)	27
Case 7.	합금강판 (제7226.91호)	32
Case 8.	호스 클램프 (제7326.90호)	37
Case 9.	화분 받침용 이동대 (제9403.20호)	43
Case 10.	배추김치 (제2005.99호)	48





case  
1

## 일체형 냉장·냉동고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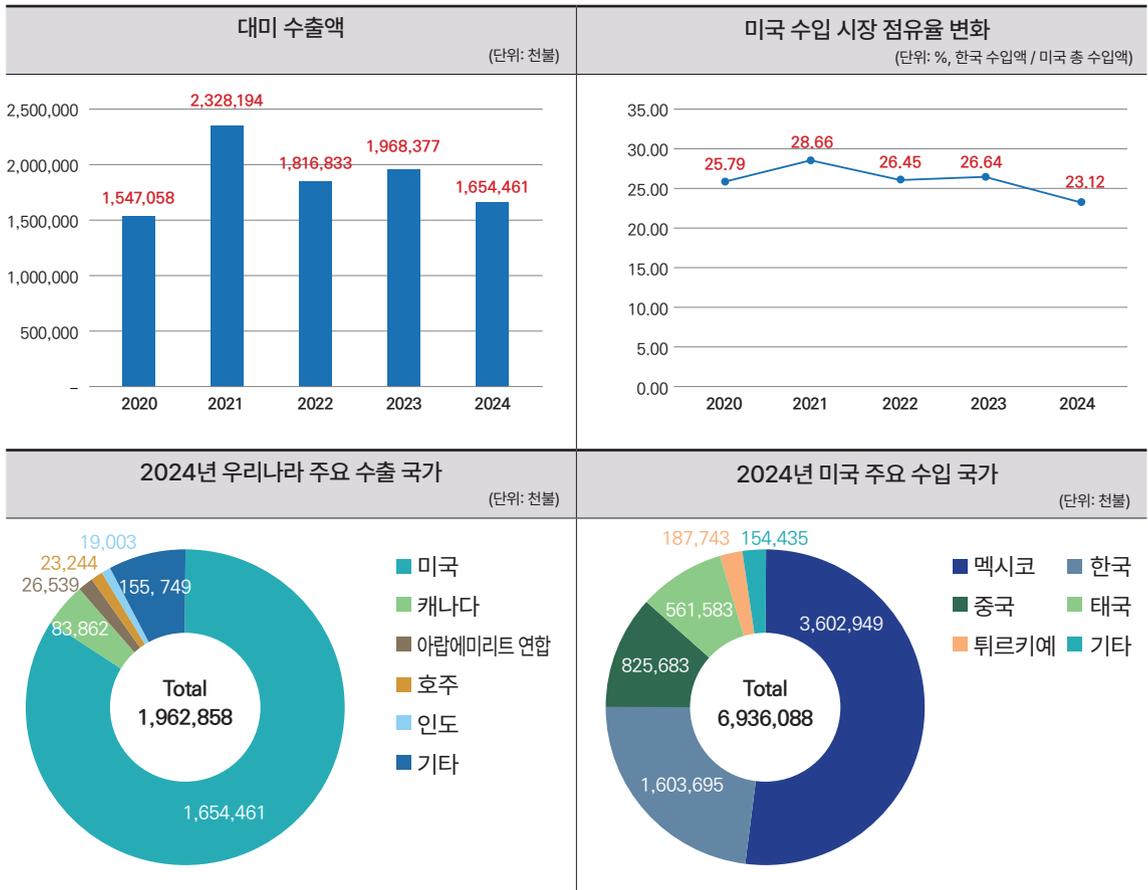
사례명	<b>일체형 냉장·냉동고</b>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14180 (2021.01.22.)
사실관계	미국, 중국,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생산된 부품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생산한 일체형 냉장·냉동고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b>시나리오 1</b> 냉각 유닛 어셈블리,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구조적·기능적 주요 요소들이 중국에서 제조되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중국산)</p> <p><b>시나리오 2</b> 냉각 유닛 어셈블리는 여전히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전반적인 기능을 보조하는 일부 구성품의 제조가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최종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압도적으로 높은 바,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멕시코산)</p>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18.1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제8418.10호부터 제8418.6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8.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8418.1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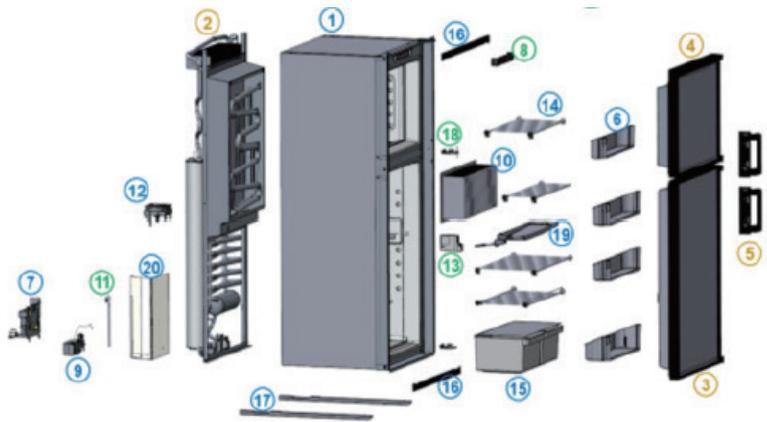
**사 례 명** [일체형 냉장·냉동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14180 (2021.01.22.)

**사실관계**

**요청자** Dometic North America (대리인: Expeditors Tradewin, LLC)

- 제품명**
- 일체형 냉장·냉동고 (모델명: DM2672)
  - 19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구성  
제품**

구분	명칭	구분	명칭
1	캐비닛 어셈블리	11	히터 어셈블리
2	냉각 유닛 어셈블리	12	팬 어셈블리
3	냉장실 도어 어셈블리	13	LED 조명 어셈블리
4	냉동실 도어 어셈블리	14	철제 선반
5	도어 손잡이 어셈블리	15	야채 보관 서랍 및 덮개
6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16	아이브로우 및 킥플레이트
7	전원 제어 모듈 어셈블리	17	캐비닛 지지대
8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18	도어 경첩
9	가스 밸브 버너 어셈블리	19	응결수 받이
10	핀 팩 어셈블리	20	하부 플레이트 어셈블리

**용도** • 냉장 및 냉동 기능을 모두 갖춘 일체형 기기

**완제품  
HTSUS** • 8418.10.00

제조과정



상세공정

**시나리오 1**

1. 여러 구성품을 멕시코로 수입 및 조달(멕시코산 46%, 중국산 44%, 미국산 8%, 기타 2%)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비닛 어셈블리</li> <li>· 가스 밸브 버너 어셈블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 제어 모듈 어셈블리</li> <li>· 철제 선반</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각 유닛 어셈블리</li> <li>·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li> <li>· 핀 팩 어셈블리</li> <li>· 도어 어셈블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단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li> <li>·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li> <li>· LED 조명 어셈블리</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 호스</li> <li>· 응결수 받이</li> <li>· 보조 버너 하우징 및 플레이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어 손잡이 어셈블리</li> <li>· 중간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li> <li>· 야채 보관 서랍 및 덮개</li> </ul>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히터 어셈블리</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미스터 어셈블리</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플 어셈블리</li> </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드웨어 부품</li> </ul>	

2. 멕시코에서 각종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3. 테스트 및 포장

4. 미국 수출

**시나리오 2**

1. 여러 구성품을 멕시코로 수입 및 조달(멕시코산 69%, 중국산 29%, 미국산 0.07%, 기타 1.93%)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비닛 어셈블리</li> <li>· 가스 밸브 버너 어셈블리</li> <li>· 전원 제어 모듈 어셈블리</li> <li>· 철제 선반</li> <li>·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li> <li>· 핀 팩 어셈블리</li> <li>· 도어 어셈블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단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li> <li>· 중간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li> <li>·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li> <li>· 배수 호스</li> <li>· 응결수 받이</li> <li>· 보조 버너 하우징 및 플레이트</li> <li>· 도어 손잡이 어셈블리</li> <li>· 야채 보관 서랍 및 덮개</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각 유닛 어셈블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ED 조명 어셈블리</li> </ul>

폴란드	· 히터 어셈블리
스웨덴	· 서미스터 어셈블리
인도네시아	· 배플 어셈블리
대만	· 하드웨어 부품

2. 멕시코에서 각종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3. 테스트 및 포장
4.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 1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로 이루어짐
- CBP는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을 ①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의 변화, ②본질적 성질의 변화, ③상업적 용도의 변화를 겪은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의 범위, 해당 부품 또는 자재들이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통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냉동 장치와 관련된 다음의 판정 사례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9293 (2020.02.25.)*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7836 (2019.12.17.)*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5178 (2019.07.25.)*

**관련 법령  
및 분석**

**판정 결과**

- ☑ 냉장 및 냉동고의 냉각 기능을 발생시키는 핵심 구성 요소는 콘덴서(condenser), 압축기(compressor), 팽창장치(expansion device), 증발기(evaporator)로, 이 구성 요소들은 제어장치, 열원, 기타 보안 구성 요소들과 결합될 때 비로소 냉각 유닛으로 완성되며, 본 사안에서 이러한 냉각 유닛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중국에서 생산함
- ☑ 다만, 냉장 및 냉동고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냉각 기능에 있다고는 하나, 냉장 및 냉동고로서의 외형 확보, 적정 온도 유지, 열 흡수 등 보조적인 기능들 또한 최종 제품의 기능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이므로,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나리오 1** 냉각 유닛 어셈블리,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구조적·기능적 주요 요소들이 중국에서 제조되며,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시나리오 2** 냉각 유닛 어셈블리는 여전히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전반적인 기능을 보조하는 일부 구성품의 제조가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최종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압도적으로 높은 바,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결론**

- ✓ **시나리오 1**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
- ✓ **시나리오 2**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III 시사점**

- 본 사안과 같이 핵심 구성요소와 더불어 여러 어셈블리들이 결합되어 완성되는 물품의 경우, CBP는 총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핵심 구성요소의 원산지가 아닌 최종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국가를 원산지로 고려하기도 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4180 (2021.01.22.), <https://rulings.cbp.gov/ruling/H314180>
- CBP Ruling NY N309293 (2020.02.25.), <https://rulings.cbp.gov/ruling/N309293>
- CBP Ruling NY N307836 (2019.12.17.), <https://rulings.cbp.gov/ruling/N307836>
- CBP Ruling NY N305178 (2019.07.25.), <https://rulings.cbp.gov/ruling/N305178>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2

## 팬 블로어 어셈블리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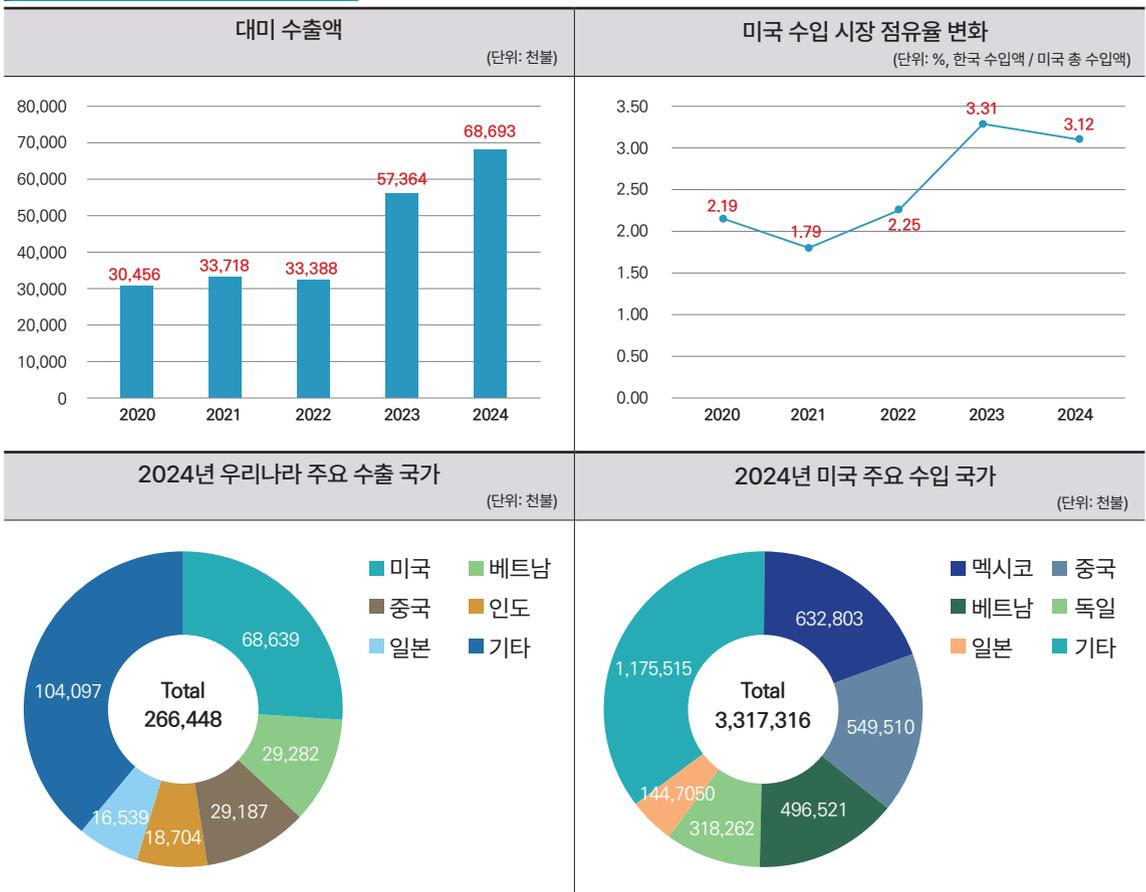
사례명	팬 블로어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18255 (2021.11.03.)
사실관계	중국산 스테이터 코어, 샤프트, 리드 와이어 하니스, 일본산 하부하우징 쉘 등의 부품을 멕시코로 수입하여 스테이터 어셈블리, 로터 어셈블리 등의 하위 어셈블리를 제작한 뒤, 이를 조립하여 생산된 팬 블로어 어셈블리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CBP Ruling NY N309707과 유사하게 하위 어셈블리 생산을 위해 수입된 중국 및 일본산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수행된 일련의 제조·조립 공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임펠러와 모터로 구성된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변형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14.5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2.3%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제8414.90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제8414.59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사 례 명** [팬 블로어 어셈블리]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18255 (2021.11.03.)

**사실관계**

<b>요청자</b>	Shinano Kenshi Corporation (대리인: TECMA Customs Solutions LLC)
<b>제품명</b>	• 팬 블로어 어셈블리 (부품번호 IDRF-3432-504-M)
<b>제품 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국산:</b> 스테이터 코어, 인슐레이터, 자성 와이어, 리드 와이어 하니스, 하부 하우징, 베어링 하우징, 샤프트, 볼 베어링, 스러스트 와셔, 자석, 로터 요크, 임펠러, 상단 하우징, 너트</li> <li>• <b>일본산:</b> 납, 납땀용 와이어, 하부 하우징 실, 웨이브 와셔, 접착제, 나사, 윤활제</li> <li>• <b>미국 또는 멕시코산:</b> PCBA, 절연 시트, 접착제, 스플릿 와셔</li> </ul>
<b>용도</b>	• CPAP(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Machine)에 사용되는 공기 순환 장치
<b>완제품 HTSUS</b>	• 8414.59.65

### 제조과정



### 상세과정

1. 중국, 일본 등에서 멕시코로 부품 수입
2. 멕시코에서 아래 공정 수행
  - 스테이터 어셈블리 생산
  - 로터 어셈블리 생산
  - 자성(magnet) 요크 어셈블리 생산
  - 팬 어셈블리 생산
  - 각 어셈블리를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부품이나 자재의 결합이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지의 핵심 쟁점은 수행된 공정의 정도 및 개별 부품이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 요소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

❖ 참고 판례: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6 CIT 204, 573 F. Supp. 1149 (1983), *aff'd*, 741 F.2d 1368 (Fed. Cir. 1984)

- 조립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이때, ①조립 공정의 성격, ②수행되는 개별 작업의 수와 종류, ③해당 조립 작업에 상당한 시간, 숙련도, 정밀도, 품질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하여 부품의 고유한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판정을 위해 아래 사례들을 인용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 부품을 서로 끼워 맞추는 프레스 피팅(press fitting)과 같은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4126 (2020.02.13.)*

- 팬 또는 펌프 어셈블리의 경우, CBP는 일반적으로 모터가 제품에 본질을 부여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5251 (2019.08.01.)*

- CBP는 일반적으로 모터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스테이터와 로터가 제조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 특정 국가에서 수행된 조립 작업이 실질적 변형에 해당할 만큼 충분히 복잡한지 여부는 하위 어셈블리 조립 과정을 포함해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9707 (2020.03.11.)*

**사례** 본 사안과 유사하게 중국, 일본, 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부품을 수입 및 조달하여 멕시코에서 스테이터 어셈블리, 로터 어셈블리, 자성(magnet) 요크 어셈블리, 팬 어셈블리를 생산한 후, 이를 조립하여 최종 제품인 팬 블로어 어셈블리를 생산

**판정** 각 유닛의 공기 순환 및 모터 부품을 포함한 중국 및 일본산 부품들이 각각의 독립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임펠러와 모터로 구성된 새로운 물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함

### 판정 결과

☑ CBP Ruling NY N309707과 유사하게 하위 어셈블리 생산을 위해 수입된 중국 및 일본산 부품들은 멕시코에서 수행된 일련의 제조·조립 공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임펠러와 모터로 구성된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변형되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 결론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이므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III 시사점

- 실질적 변형을 판단할 때,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의 성격, 해당 국가에서 행해진 전체 공정의 수준, 각 부품이 공정을 통해 독립적인 정체성을 상실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4180 (2021.01.22.), <https://rulings.cbp.gov/ruling/H314180>
- CBP Ruling HQ H303864 (2019.12.2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864>
- CBP Ruling HQ H304126 (2020.02.13.), <https://rulings.cbp.gov/ruling/H304126>
- CBP Ruling NY N305251 (2019.08.01.), <https://rulings.cbp.gov/ruling/N305251>
- CBP Ruling HQ H303529 (2019.06.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3529>
- CBP Ruling NY N309707 (2020.03.11.), <https://rulings.cbp.gov/ruling/N309707>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Belcrest Linens v. United States (1984),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309750/belcrest-linens-v-united-states/>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3

##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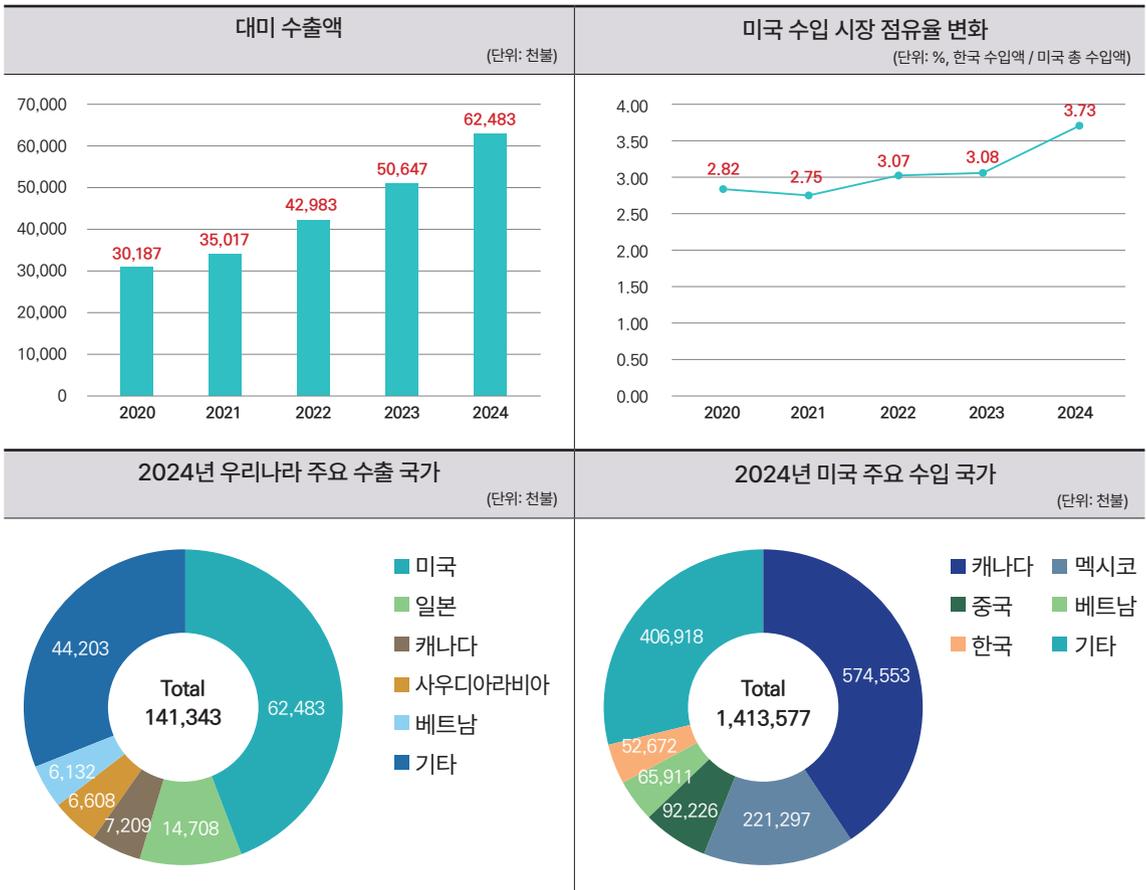
사례명	<b>알루미늄 울타리 키트</b>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34681 (2023.09.06.)
사실관계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기타 알루미늄 부품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절단, 펀칭, 라우팅, 용접 및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울타리 키트 제조
쟁점 및 판정	①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멕시코 내에서 수행된 절단, 펀칭, 라우팅, 용접 및 조립 등의 공정을 통해 울타리 키트라는 새로운 상업적 상품이 탄생하였으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이며,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25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7610.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5.7%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610.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34681 (2023.09.06.)

**사실관계**

<b>요청자</b>	Custom Home Goods, LLC	
<b>제품</b>	<b>제품명</b>	•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소매용)
	<b>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일 탑 플랫폼(6'x5') 20개</li> <li>• 라인 포스트(2"x2") 20개</li> <li>• 게이트 포스트(2"x2") 2개</li> <li>• 포스트 캡 22개</li> <li>• 보행자용 용접 게이트(4'x5') 1개</li> <li>• 나일론 게이트 경첩 2개</li> <li>• 게이트 잠금장치 1개</li> </ul>
	<b>완제품 HTSUS</b>	• 7610.90.0080

**제조과정**



- 상세과정**
1.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 알루미늄 포스트 캡, 알루미늄 게이트 및 연결용 하드웨어(나사, 힌지 등)를 멕시코로 수입
  2.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가공하여 레일 탑 플랫폼, 라인 포스트, 게이트 포스트 생산
  3. 구성품 조립 후 포장
  4.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제301조, 제232조, 제201조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이러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조립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 이때, ①조립 공정의 성격, ②수행되는 개별 작업의 수와 종류, ③해당 조립 작업에 상당한 시간, 숙련도, 정밀도, 품질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참고 판정: *C.S.D. 80-111, C.S.D. 85-25, C.S.D. 89-110, C.S.D. 89-118, C.S.D. 90-51, and C.S.D. 90-97*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하여 부품의 고유한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판정 결과

- ☐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기타 알루미늄 부품이 멕시코로 수입되어, 절단, 펀칭, 라우팅, 용접 및 조립 등 복합적인 가공 공정을 거쳐 울타리 키트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 ☐ 따라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이며, 멕시코산 제품은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됨

## 결론

- ✓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되며, 제232조에 따른 무역제재는 적용되지 않음

## Ⅲ 시사점

-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기타 부품을 가공·조립하여 울타리 키트를 제조하는 경우, 새로운 상업적 상품을 창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case  
4

##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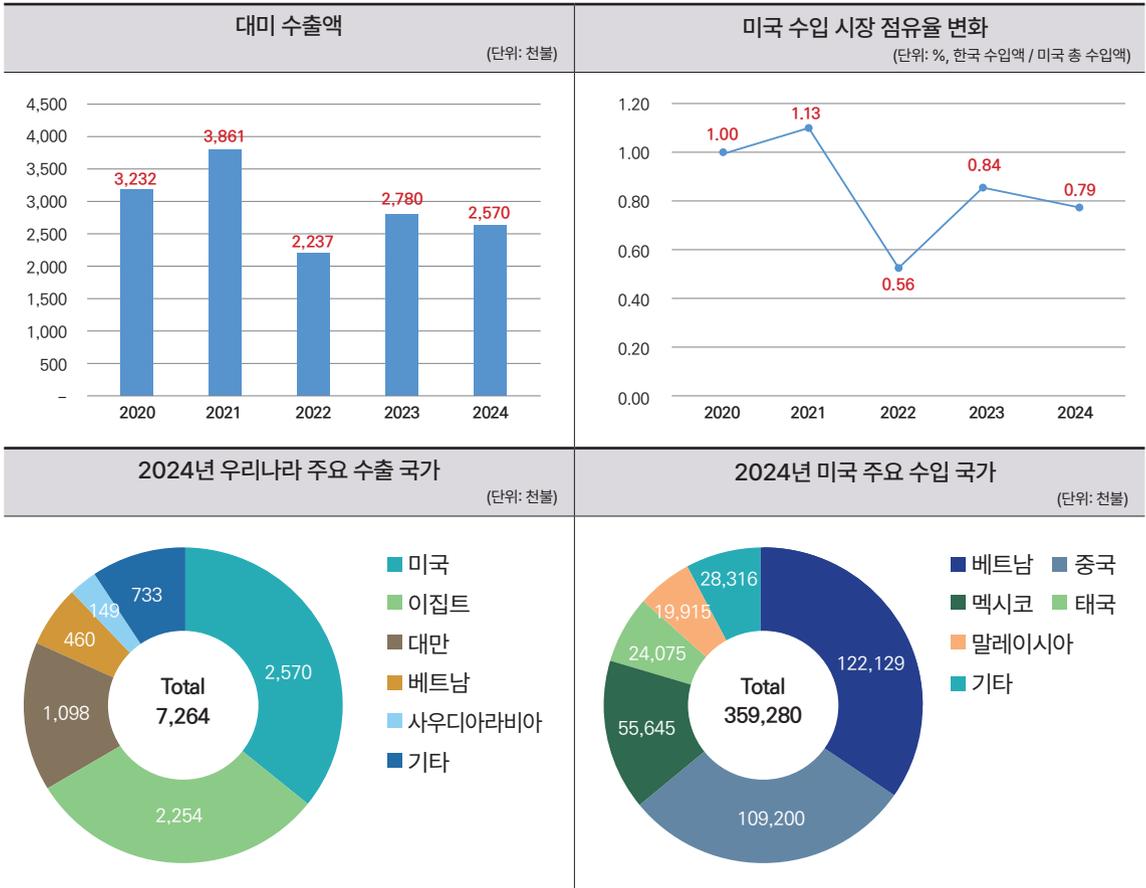
사례명	<b>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b>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및 원산지표시
사례번호	NY N335300 (2023.09.29.)
사실관계	중국산 그리드/디쉬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풀다운 수전을 태국으로 수입하여 태국에서 생산한 싱크와 소매 포장한 뒤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싱크 키트의 본질은 태국에서 생산된 싱크에 의해 부여되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태국이며, 이에 따라 제301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p> <p>② 부속품의 개별 원산지표시 의무</p> <p>그리드/식기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풀다운 수전은 세트 포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독립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요소에 중국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설치용 하드웨어는 최종 설치 시 싱크에 통합되어 독립적 정체성을 상실하므로, 별도 원산지표시가 요구되지 않음</p>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li><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li><li>-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li></ul>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7324.1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3.4%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7324.1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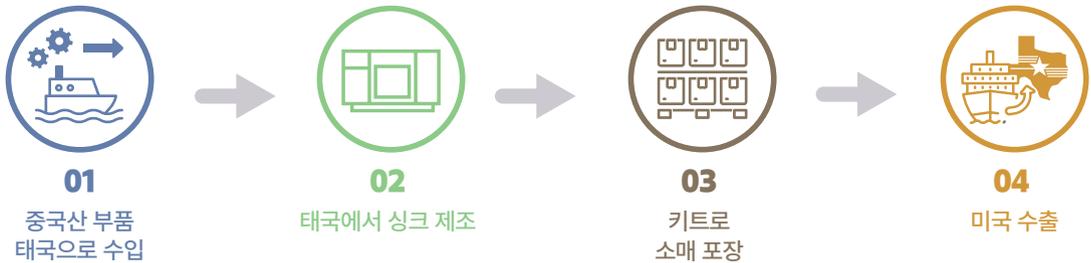
**사 례 명**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및 원산지표시

**사례번호** NY N335300 (2023.09.29.)

**사실관계**

요청자	Kraus Plumbing USA, LLC (대리인: Sonnenberg & Cunningham PA)	
제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용 스테인리스강 싱크 키트 2종</li> <li>- 모델 번호: KHU100-27</li> <li>- 모델 번호: KCH-1000</li> </ul>	
제품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HU110-27 (Standart P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인치 언더마운트형 16게이지 스테인리스강 싱크(태국산)</li> <li>- 스테인리스강 그리드/디쉬 랙(중국산)</li> <li>-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배수 조립품 및 캡(중국산)</li> <li>- 설치용 하드웨어, 템플릿, 설명서 포함</li> </ul> </li> <li>• KCH-1000 (Loft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3인치 드롭인/언더마운트 겸용 스테인리스강 싱크(태국산)</li> <li>- 스테인리스강 그리드/디쉬 랙(중국산)</li> <li>-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배수 조립품 및 캡(중국산)</li> <li>- 풀다운 수전(중국산)</li> <li>- 설치용 하드웨어, 템플릿, 설명서 포함</li> </ul> </li> </ul>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 주방용 조리대(싱크대)에 설치되어 음식물 준비, 설거지, 배수처리를 위한 통합형 구성품</li> </ul>	
완제품 HTS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324.10.0050</li> </ul>	

제조과정



상세과정

1. 중국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
2. 태국에서 싱크 제조
3. 중국산 부품 및 태국산 싱크를 키트로 소매 포장
4.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 부속품의 개별 원산지표시 의무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가공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거나 경미하여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판정 결과

☑ 해당 사안에서 태국에서 제작된 싱크는 가치, 무게 및 기능 면에서 세트 전체의 본질을 결정하므로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품으로 간주되며, 여러 중국산 부품들이 결합되기는 하나, 싱크 자체를 이전과 다른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새로운 상업적 물품으로 실질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아님

☑ 일반해석규칙 3에 따라 세트로 구성된 상품 중, 세트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품목이 제301조 조치 대상일 경우 전체 세트가 제301조 적용 대상이 되나, 해당 사례의 경우, 핵심 구성품인 싱크가 태국산이므로, 제301조 적용 대상이 아님

2

## 부속품의 개별 원산지표시 의무

##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관련 법령  
및 분석**

- CBP Treasury Decision 91-7에 따르면, 세트, 혼합물 또는 복합 물품에 포함된 구성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경우, 각 구성품은 개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판정 결과**

☑ 본 사례에서, 그리드/식기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풀다운 수전은 세트 포장에도 불구하고 개별 독립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요소에 중국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설치용 하드웨어는 최종 설치 시 싱크에 통합되어 독립적 정체성을 상실하므로, 별도 원산지표시가 요구되지 않음

**결론**

- ✓ 핵심 구성품인 싱크가 태국에서 제조되었으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태국이며,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 ✓ 중국산 구성품(그리드/식기 랙, 배수 조립품 및 캡, 풀다운 수전)은 개별 독립된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부품에 중국산임을 표시해야함

**III 시사점**

- 싱크 키트의 경우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싱크가 제조된 국가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원산지표시 목적상 세트, 혼합물 또는 복합 물품에 개별 정체성을 유지하는 외국인 부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5300 (2023.09.29), <https://rulings.cbp.gov/ruling/N335300>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5

##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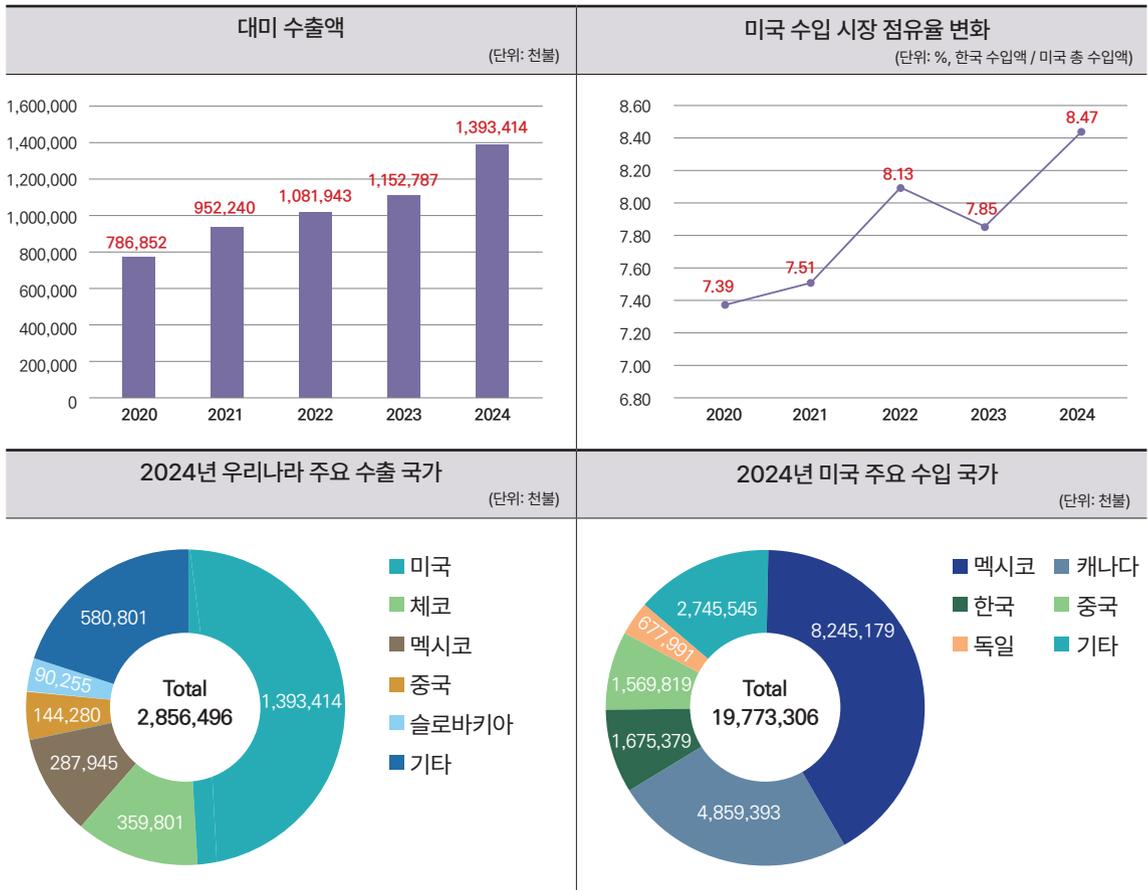
사례명	<b>자동차용 트렁크 하판</b> 원산지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36183 (2023.11.22.)
사실관계	중국산 기판, 네덜란드산 직물, 미국산 접착제·나사·브래킷·라벨, 캐나다산 클립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안의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은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되었으므로 『19 C.F.R. § 102.20』에 따라 제8708.2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원재료 중 하나인 기판의 HS Code가 제8708.29호에 해당하여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19 C.F.R. § 102.11(b)』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li> <li>• 『19 C.F.R. § 102.11(b)』에 따르면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 자재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자재는 중국산 기판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li> </ul> <p>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국산 기판에 의해 결정되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인해 이러한 기판의 명칭, 성질,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이며,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li> <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02(19 C.F.R. § 102)</li> <li>-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li> </ul>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708.2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2.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708.29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사 례 명**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원산지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36183 (2023.11.22.)

**사실관계**

요청자	Grupo Antolin Silao, S.A. de C.V.(대리인: Victor Gonzalez LLC)	
제품	제품명	•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
	구성	• 기판 (중국산) • 직물 (네덜란드산) • 접착제, 나사, 브래킷, 라벨 (미국산) • 클립 (캐나다산) 등
	용도	• 자동차의 트렁크 하단에 위치하는 적재면 보강 패널
	원재료 HTSUS	• 중국산 기판: 8708.29
	완제품 HTSUS	• 8708.29.5160

### 제조과정



**01**

여러 국가산 재료를  
멕시코로 수입



**02**

최종 제품 생산



**03**

미국 수출

### 상세과정

1. 중국,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산 재료를 멕시코로 수입
2. 중국산 기판에 직물을 결합
3. 나사, 클립 브래킷, 라벨 등을 부착하여 완제품 제조
4.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단, NAFTA 또는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19 C.F.R. § 102』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적용됨
  - 『19 C.F.R. § 102.11(a)』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은 다음에 따름
    - ①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②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③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③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제8708.2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제8708.95호는 제외한다)
  - ☑ 다만, 『19 C.F.R. § 102.11(a)』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19 C.F.R. § 102.11(b)』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이는 다음과 같음
    -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단일 자재(single material)의 원산지로 간주된다.

**판정 결과**

- ☑ 본 사안의 자동차용 트렁크 하판은 외국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되었으므로 『19 C.F.R. § 102.20』에 따라 제8708.29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원재료 중 하나인 기판의 HS Code가 제8708.29호에 해당하여 세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19 C.F.R. § 102.11(b)』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 함
- ☑ 『19 C.F.R. § 102.11(b)』에 따르면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단일 자재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자재는 중국산 기판에 해당하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관련 법령 및 분석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Uniroyal*)

-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판정 결과

☑ 최종 제품의 본질적 특성은 중국산 기판에 의해 결정되고 멕시코에서 수행된 공정으로 인해 이러한 기판의 명칭, 성질,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원산지는 중국이며,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함

## 결론

- ✓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중국임
- ✓ 제301조 적용을 위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이므로 해당 조치 대상에 해당함

## Ⅲ 시사점

-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시 우선적으로 『19 C.F.R. § 102.11(a)』 규정이 적용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19 C.F.R. § 102.11(b)』에 따라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자재에 의해 원산지가 결정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6183 (2023.11.22.), <https://rulings.cbp.gov/ruling/N336183>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CBP 19 C.F.R. § 102,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02>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6

절임 마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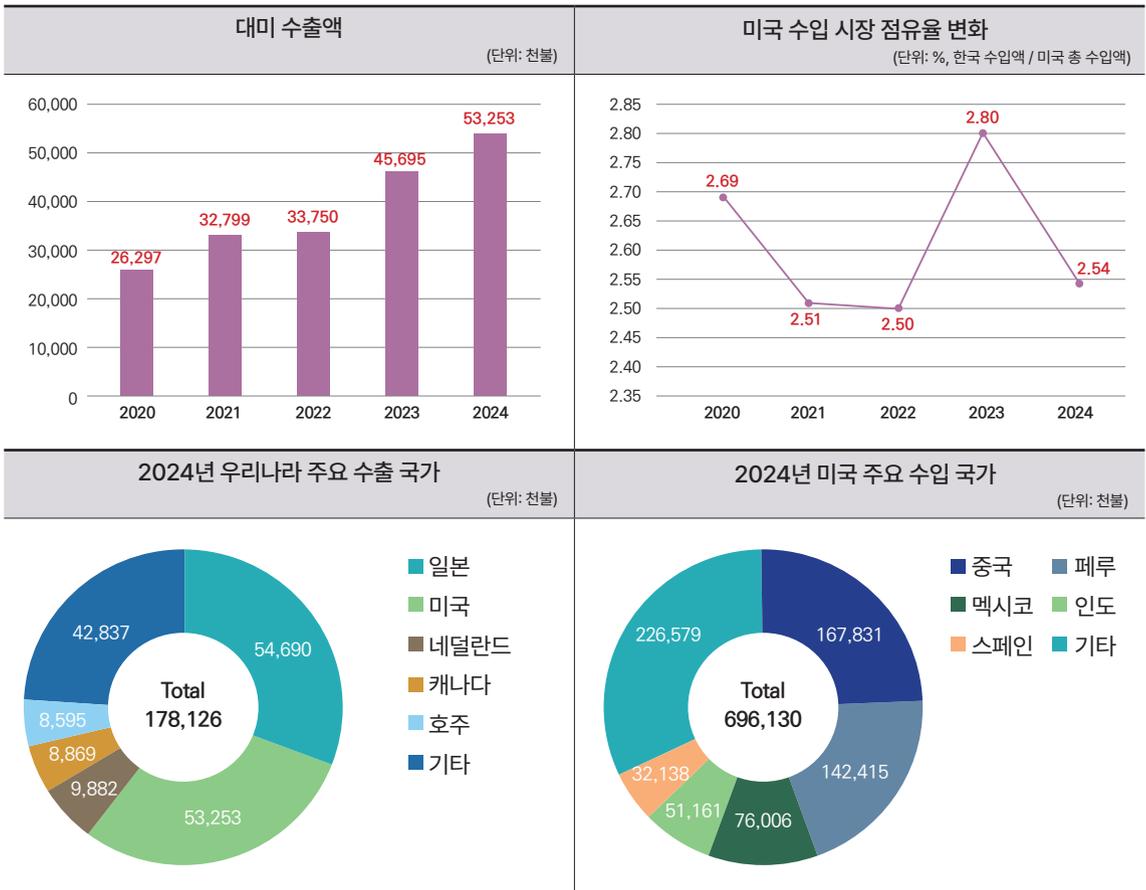
사례명	<b>절임 마늘</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5545 (2024.04.11.)
사실관계	중국에서 재배 및 수확된 마늘구근을 일본으로 수입하여 세척, 염분 제거, 가열 및 냉각, 선별, 절임, 기타 재료와의 혼합, 고액 분리, 계량, 포장, 검사, 살균 등의 과정을 거쳐 절임 마늘을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b>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b> 중국에서 재배 및 수확된 마늘 구근이 일본에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절임 마늘로 가공되었으나, 이러한 공정은 마늘의 본질적인 성질과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2005.9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20%
	미국 기본세율	0~14.9% or 0.8¢/kg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제2005.99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사 례 명** [절임 마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35545 (2024.04.11.)

**사실관계**

<b>요청자</b>	Wismettac Asian Foods, Inc.	
<b>제품명</b>	• 절임 마늘	
<b>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늘(67%), 고과당 액상당(8%), 단백질 가수분해물(8%), 간장(6%), 물(6%), 소금(2%), L-글루타민산나트륨(2%), 양조식초(1%)</li> <li>• 극소량의 캐러멜 색소, 젖산, 소르빈산칼륨, 구연산, 고추 등 함유</li> </ul>	
<b>용도</b>	• 식용	
<b>완제품 HTSUS</b>	• 2005.99.9700	

### 제조과정



- 상세공정**
1. 중국에서 재배 및 수확한 마늘을 일본으로 수입
  2. 일본 공정
    - 마늘 세척 및 염분 제거
    - 가열 및 냉각
    - 선별
    - 식초, 알코올, 간장 및 기타 성분이 포함된 염수에 절임 및 혼합
    - 고체-액체 분리 후 계량
    - 포장 및 검사
    - 섭씨 90도 살균기에 넣고 25~30분 살균
  3.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27 C.C.P.A. 267 (1940)*

❖ 참고 판례: *National Juice Products Association v. United States, 628 F. Supp. 978 (Ct. Int'l Trade 1986)*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K81363 (2003.11.28.)*

**사례** 중국, 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재배된 마늘 구근을 콜롬비아에서 마늘 쪽으로 분리한 후 껍질을 제거하고 소매용으로 포장 가공

**판정**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26044 (2022.06.08.)*

**사례** 스페인에서 재배된 생마늘을 남아프리카로 수입하여 발효기에 넣고 토스트 처리한 후 소량의 쌀겨와 혼합하여 흑마늘 시즈닝 생산

**판정** 스페인산 마늘이 여전히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흑마늘 시즈닝의 원산지를 스페인으로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8973 (2020.02.24.)*

**사례** 미국에서 재배, 수확, 탈각한 콩을 일본으로 수입한 후, 혼합, 세척,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침지, 가열 및 증기처리 함

**판정** 실질적 변형 불인정

- CBP는 커피 제조를 위한 로스팅(roasting)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로스팅 및 이와 유사한 가공 공정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008056 (2007.03.16.)*

**사례** 껍질을 제거한 캐슈넛을 볶은 뒤 통조림 처리

**판정** 실질적 변형 불인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G89921 (2001.06.12.)*

**사례** 건조된 콩과 병아리콩을 재수화, 통조림 처리, 180°F의 뜨거운 소금물에 담금, 밀봉, 260°F의 회전식 조리기에서 15분 이상 조리, 냉각, 라벨링, 포장함

**판정** 실질적 변형 불인정

판정 결과

☐ 중국에서 재배 및 수확된 마늘 구근이 일본으로 운송되어, 세척, 염분 제거, 가열 및 냉각, 선별, 절임, 기타 재료와의 혼합, 고액 분리, 계량, 포장, 검사, 살균 등의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쳤으나, 이러한 공정은 마늘의 본질적인 성질과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관련 법령 및 분석

#### 기타 의견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 결론

✓ 실질적 변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됨

## Ⅲ 시사점

- 가열, 절임 및 기타 재료와 혼합 등의 공정을 통해 마늘 구근을 절임 마늘로 변형시켰을지라도, CBP는 마늘이라는 명칭, 형태 및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음

##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35545 (2024.04.11.), <https://rulings.cbp.gov/ruling/N335545>
- CBP Ruling NY K81363 (2003.11.28.), <https://rulings.cbp.gov/ruling/K81363>
- CBP Ruling NY N326044 (2022.06.08.), <https://rulings.cbp.gov/ruling/N326044>
- CBP Ruling NY N308973 (2020.02.14.), <https://rulings.cbp.gov/ruling/N308973>
- CBP Ruling NY N008056 (2007.03.16.), <https://rulings.cbp.gov/ruling/N008056>
- CBP Ruling NY G89921 (2001.06.12.), <https://rulings.cbp.gov/ruling/G89921>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Juice Products Ass'n v. United States(198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596009/national-juice-products-assn-v-united-states/?q=National+Juice+Products+Association+v.+United+States>

case  
7

## 합금강판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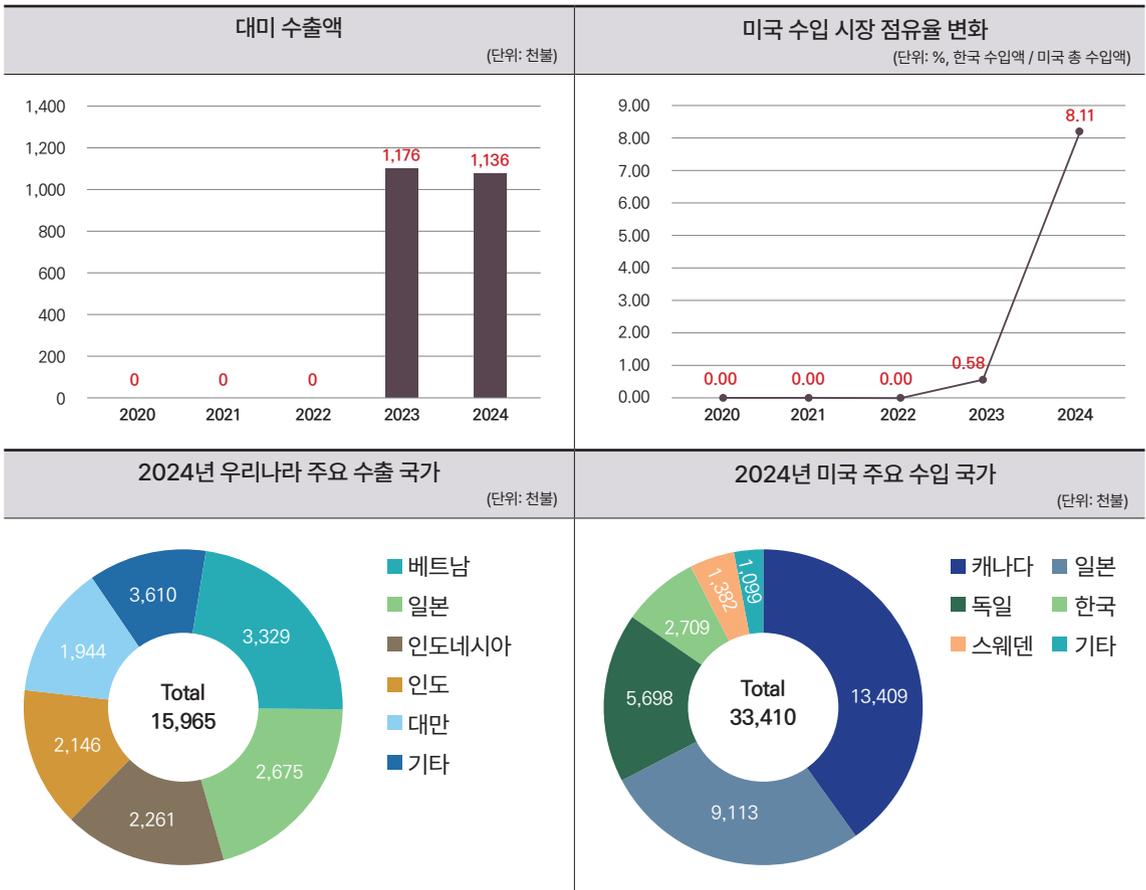
사례명	<b>합금강판</b>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0819 (2024.06.26.)
사실관계	프랑스에서 제조된 합금강판을 영국으로 운송하여 화학조성 확인 후 워터젯 절단 및 치수 절단된 합금강판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강판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운송되는 시점에도 강판이었고 영국에서의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시점에도 여전히 강판이며, 단순히 강판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절단하는 공정은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p> <p>②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프랑스이며, 제232조에 따른 무역제재 대상일 수 있음</p>
근거법령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7226.91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7226.91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례명** [합금강판] 원산지 및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0819 (2024.06.26.)

**사실관계**

요청자	Align Precision Philadelphia, LLC (대리인: Trans-Border Global Freight Systems)		
제품명	• Invar 36 합금강판		
제품 용도	• 반도체 산업에서 마이크로칩 제조 장비의 부품용으로 사용		
완제품 HTSUS	• 7226.91.5000		

제조과정



상세과정

**프랑스**

- 프랑스산 철강 슬래브를 열간압연
- 어닐링 수행
- 쇼트 블라스트 처리하여 합금강판 생산
- 영국으로 운송

**영국**

- 화학 성분 분석
- 워터젯을 통해 절단
- 목재 상자에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된 공정이나 재료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발생시켜야만 새로운 원산지가 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판정 결과

- ☑ 강판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운송되는 시점에도 강판이었고 영국에서의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강판이며, 단순히 강판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절단하는 공정은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2

##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 관련 법령 검토

- ☑ 제301조, 제232조, 제201조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함
- ☑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9704 and 9705)』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혹은 쿼터가 부과됨

## 판정 결과

- ☑ 해당 제품(HTSUS 7226.91.5000)은 관세 또는 쿼터 대상일 수 있으며, 수입 시 Chapter 72, 73 또는 76에 따른 본래 분류와 함께 Chapter 99(추가 관세 분류)도 함께 신고해야 함

## 기타 의견

- ☑ 해당 물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CBP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판정과 별개의 것이므로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TA)에서 발행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하길 권고함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프랑스임
- ✓ Section 232의 철강 추가 관세 판단 시에도 프랑스산으로 간주하며, 대상이 될 수 있음

**III 시사점**

- 단순 절단 및 화학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재료를 새로운 상업적 제품으로 변경시키지 못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0819 (2024.06.26.), <https://rulings.cbp.gov/ruling/N340819>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862&num=0&edition=prelim>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8

호스 클램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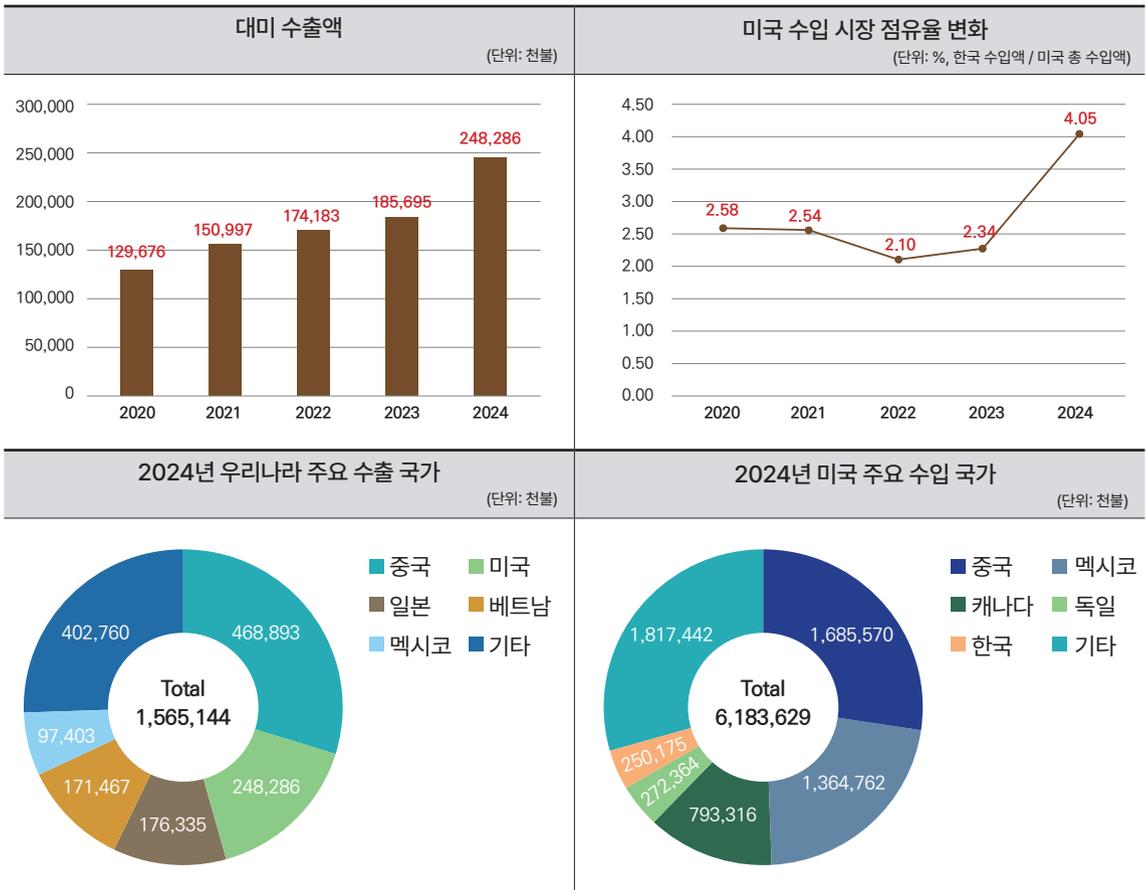
사례명	<b>호스 클램프</b> USMCA 원산지 및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1003 (2024.07.15.)
사실관계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슬리팅 스톱을 가공하여 밴드와 하우징을 생산한 뒤, 중국산 나사와 결합하여 최종 제품인 클램프를 만들고 세척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USMCA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해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었으므로 『19 C.F.R. § 102.20』에 기재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코일은 제7219호 또는 제7220호에, 중국산 나사는 제7318호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캐나다로 판정됨</p> <p>②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캐나다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절단, 성형, 천공, 세척 등)을 통해 인도산 슬리팅 스톱과 중국산 나사는 특정 표준에 적합한 클램프로 제조되고 이를 통해 실제 조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캐나다에서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 탄생한 것으로 판정함</li><li>•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이며,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에 따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li></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li><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02(19 C.F.R. § 102)</li><li>-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li><li>-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19. U.S.C. § 1862)</li><li>-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251)</li></ul>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7326.9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8.6%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32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7326.9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 II 판정사례

**사 례 명** [호스 클램프] USMCA 원산지 및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NY N341003 (2024.07.15.)

**사실관계**

요청자	Murray Corporation (대리인: Sandler, Travis & Rosenberg, P.A.)	
제품	제품명	• HSS 시리즈 스테인리스강 워드라이브 호스 클램프
	구성	• 밴드 • 하우징 • 나사
	용도	• 실내·외 호스 수리 및 이음, 누수 방지 고정용
	원재료 HTSUS	•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코일: 7219 or 7220 • 중국산 나사: 7318
	완제품 HTSUS	• 7326.90.8688

### 제조과정



- 상세과정**
1. 인도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강 코일(슬리팅 스톱) 및 중국산 나사를 캐나다로 수입
  2. 슬리팅 스톱 절단
  3. SAE 호스 클램프 표준 J1508에 맞춰 밴드와 하우징 천공 및 성형
  4. 제조된 밴드, 하우징 및 중국산 나사를 결합하여 최종 제품 완성
  5. 세척 후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USMCA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
- ✓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USMCA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단, NAFTA 또는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19 C.F.R. § 102』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적용됨
  - 『19 C.F.R. § 102.11(a)』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은 다음에 따름
    - ⓐ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제7326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이 상품군 이외의 다른 호에서 제7325호에서 제7326호까지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판정 결과**

- ☐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해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었으므로 『19 C.F.R. § 102.20』에 기재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인도산 스테인리스강 코일은 제7219호 또는 제7220호에, 중국산 나사는 제7318호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캐나다로 판정됨



**2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에 따른 무역정책 실행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에 따름
  -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기준: 새로운 명칭(name) , 성질(character), 용도(use) 획득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2)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2)

## 관련 법령 및 분석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에 불과하여 해당 물품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실질적 변형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 판정 결과

- ☑ 캐나다에서 수행된 제조공정(절단, 성형, 천공, 세척 등)을 통해 인도산 슬리팅 스톱과 중국산 나사는 특정 표준에 적합한 클램프로 제조되고 이를 통해 실제 조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캐나다에서 명칭, 성질, 용도 면에서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이 탄생한 것으로 판정함
- ☑ 이에 따라,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캐나다이며,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에 따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

## 결론

- ✓ 호스 클램프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칙에 따라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캐나다임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 또한 캐나다로 제201조, 제232조 및 제301조 추가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III 시사점

- 해당 제품의 경우 캐나다에서 절단, 천공 및 성형 등 비교적 단순한 공정이 수행되었으나, CBP는 최종 제품의 용도 및 기능이 호스 수리, 누수 방지 등을 위한 고정 및 조임에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통해 이러한 기능과 용도가 충분히 창출되었다고 판단함

## IV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1003 (2024.07.15.), <https://rulings.cbp.gov/ruling/N341003>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02,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02/subpart-B/section-102.11>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case  
9

## 화분 받침용 이동대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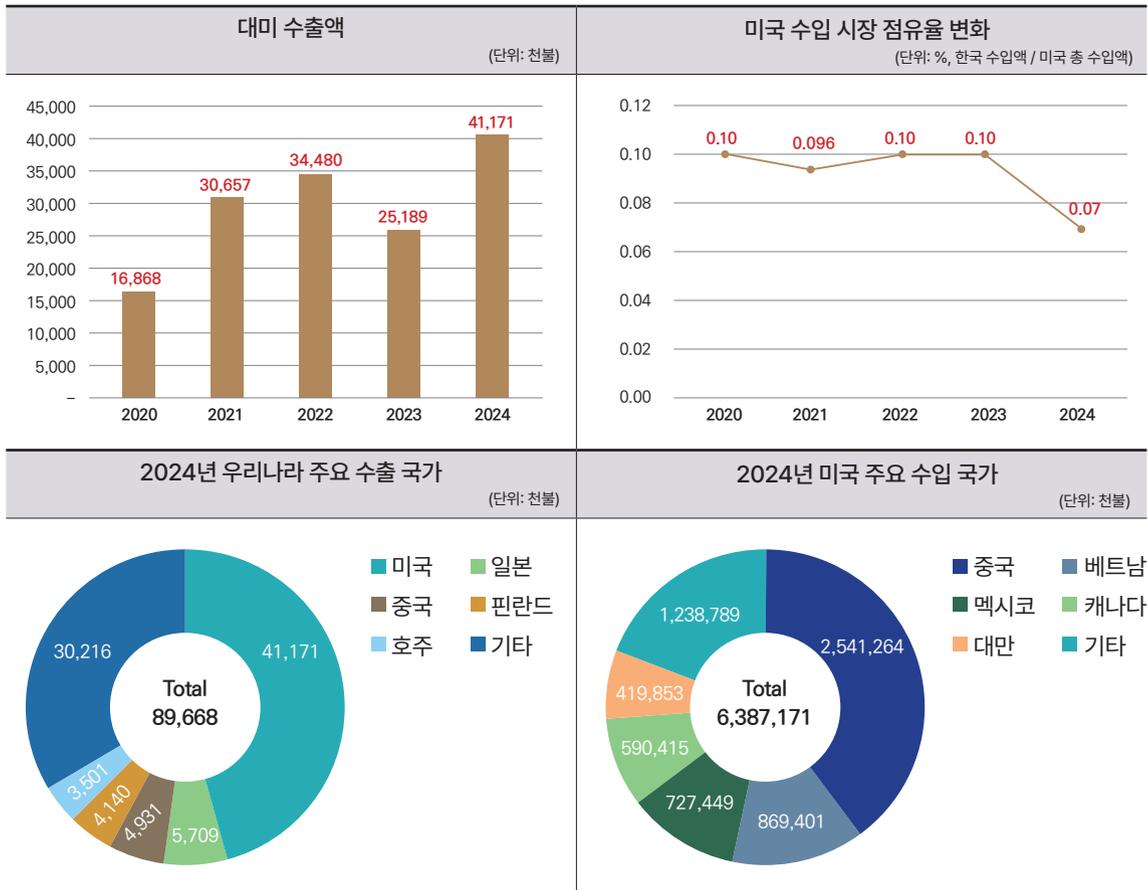
사례명	<b>화분 받침용 이동대</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2353 (2024.09.11.)
사실관계	중국산 원형 상판, 캐스터, 사각 강철 튜브 등을 캄보디아로 수입하여 절곡, 절단, 용접, 연마, 도금, 조립 등의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인 화분 받침용 이동대를 생산한 뒤, 포장하여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국산 원형 상판은 제품의 기능과 외관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으로 전체 자재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캄보디아로 수입될 당시부터 최종 제품에 전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음</li><li>•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공정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데 있어 비교적 단순한 공정으로 전체 제품 원가의 약 4분의 1 정도만을 차지하므로 중국산 부품에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킬 정도의 공정이 수행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li></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li><li>-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li></ul>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9403.2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9403.2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화분 받침용 이동대]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NY N342353 (2024.09.11.)

**사실관계**

요청자	Mullally International Inc.	
제품명	• 화분 받침용 이동대(Planter dolly) (모델번호: 1807149)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형 상판(중국산)</li> <li>• 사각 강철 튜브 롤(중국 혹은 베트남산)</li> <li>• 4개의 회전 캐스터(중국산)</li> <li>• 너트 4개(중국산)</li> </ul>	
용도	• 화분을 올려놓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정용 이동형 받침대	
완제품 HTSUS	• 9403.20.0050	

제조과정



상세공정

1. 중국 및 베트남산 자재 캄보디아로 수입
2. 캄보디아 제조과정
  - 사각 강철 튜브를 링 형태로 절곡, 절단, 용접, 연마, 드릴 작업 수행
  - 원형 상판 연마 및 샌딩
  - 상판과 링 용접
  - 너트 4개를 상판에 용접
  - 슬래그 및 거친 모서리 연마
  - 화학 세척, 음극 전기 도금 및 분체도장 처리
  - 캐스터를 용접된 너트에 부착
3. 검사 및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기준: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획득

-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 만약, 제조 또는 결합 공정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사례** 여러 신발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조립

**판정** 원제품인 신발의 본질적 특성이 외국인 부품(갑피)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CBP는 Uniroyal(1983) 사례를 인용하여 중국산 부품이 최종 제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신발 갑피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단함

- 중국산 원형 상판은 제품의 기능과 외관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으로 전체 자재비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캄보디아로 수입될 당시부터 최종 제품에 전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
- 더불어 중국산 캐스터는 자재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최종 제품의 주요 기능인 이동성을 가능하게 하고 바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판을 들어 올리는 부가적 기능도 수행함
- 캄보디아에서 제조되는 유일한 부품인 강철 링은 제품에 강성을 부여하지만 외관상 보이지 않으며,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공정도 단순하여 전문화된 장비나 기술이 거의 필요 없는 부품임
- 또한 너트 용접, 금속 마감 작업 등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전체 공정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데 있어 비교적 단순한 공정으로 전체 제품 원가의 약 4분의 1 정도만을 차지하므로 캄보디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관련 법령 및 분석

####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HTSUS, Chapter 99, Subchapter III, Note 20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입 시 기본 세번 외에 Chapter 99에 따른 세번인 9903.88.03도 함께 신고해야함

### 결론

- ✓ 중국산 원형 상판, 캐스터 등은 캄보디아에서 수행된 작업에 의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화분 받침용 이동대의 원산지는 중국임

## Ⅲ 시사점

-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 수입 시점에 이미 최종 제품에 전용될 목적으로 상당 부분 가공된 경우, 실질적 변형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2353 (2024.09.11.), <https://rulings.cbp.gov/ruling/N342353>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case  
10

## 배추김치

###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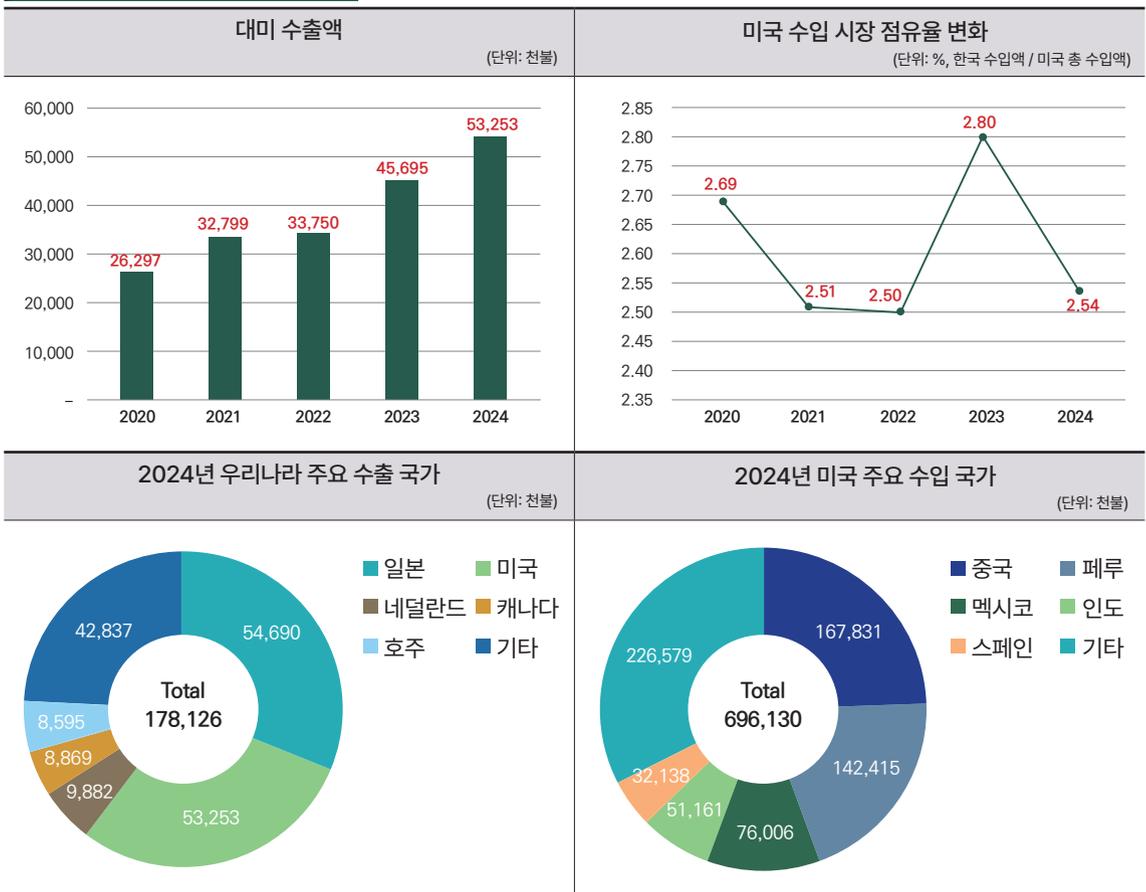
사례명	<b>배추김치</b>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및 한-미 FTA 적용 여부
사례번호	NY N350768 (2025.07.28.)
사실관계	중국산 절인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산 재료들과 속을 섞고 발효하여 완성된 양념 배추김치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중국산 절인 배추는 한국으로 수입될 시점에도 배추였고 한국에서 가공을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배추이므로,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아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p> <p>②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비원산지 재료인 중국산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은 모두 제20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되어 세번변경요건이 충족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판정되며, 한-미 FTA에 따른 특혜 적용이 가능함</p>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HTSUS(19 U.S.C § 1202) General Note(GN) 33(o)/chapter 20/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2005.99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20%
	미국 기본세율	0~14.9% or 0.8¢/kg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제8414.59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및 한-미 FTA 적용 여부

**사례번호** NY N350768 (2025.07.28.)

**사실관계**

요청자	Banchandanji Co., LTD. (대리인: JangBaek Customs Attorney)		
제품	제품명	• 김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인 배추 (중국산)</li> <li>• 무 (한국산)</li> <li>• 멸치액젓 (한국산)</li> <li>• 고춧가루 (중국산)</li> <li>• 냉동 마늘 (중국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탕 (한국산)</li> <li>• 생강 (한국산)</li> <li>• 찹쌀가루 (한국산)</li> <li>• 정제 소금 (한국산)</li> <li>• 글루탐산나트륨 (한국산)</li> </ul>
	용도	• 식용	
	완제품 HTSUS	• 2005.99.9700	

제조공정



상세공정

1. 중국산 절인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
2. 한국 제조공정
  - 무, 마늘, 생강을 다져 물과 찹쌀가루를 넣고 끓인 후 식힘
  - 고춧가루와 기타 재료를 넣어 양념 완성
  -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림
  - 밀봉 용기에 넣어 저장소에서 발효(0~10°C 온도에서 1~7일 발효)
  - 10kg 플라스틱 파우치에 포장
3. 미국 수출

##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 관련 법령 및 분석

1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기준: 새로운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 획득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아래 판정을 인용

❖ 참고 판례: *CBP Ruling NY N348683 (2025.06.05.)*

**사례** 그리스산 올리브를 스페인에서 세척, 발효, 선별 및 씨 제거하고 피망이나 치즈와 같은 속재료를 넣은 후 병이나 캔에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

**판정** 그리스산 올리브는 수입 시점에도 올리브이고 스페인에서의 가공 후에도 올리브이므로 실질적 변형 불인정

❖ 참고 판례: *CBP Ruling NY N326044 (2022.06.08.)*

**사례** 스페인에서 재배된 생마늘을 남아프리카로 수입하여 발효기에 넣고 토스트 처리한 후 소량의 쌀겨와 혼합하여 흑마늘 시즈닝 생산

**판정** 스페인산 마늘이 여전히 그 성질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흑마늘 시즈닝의 원산지를 스페인으로 판정

❖ 참고 판례: *CBP Ruling NY N308973 (2020.02.24.)*

**사례** 미국에서 재배, 수확, 탈각한 콩을 일본으로 수입한 후, 혼합, 세척, 소금과 식초를 넣은 물에 침지, 가열 및 증기처리 함

**판정** 실질적 변형 불인정

#### 판정 결과

- ☑ 중국산 배추는 한국으로 수입될 시점에도 배추였고 한국에서 가공을 거친 이후에도 여전히 배추이므로, 한국에서의 공정은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아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

관련 법령  
및 분석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제2005.99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HTSUS(19 U.S.C § 1202) GN 33(o)/chapter 20/1』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함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7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0류의 주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판정 결과

- ☐ 비원산지 재료인 중국산 배추, 고춧가루, 냉동 마늘은 모두 제20류 이외의 다른 류에 분류되어 세번변경 요건이 충족되므로 한국산으로 판정되며, 한-미 FTA에 따른 특혜 적용이 가능함

기타 의견

- ☐ 해당 제품은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42 U.S.C. § 262)』의 적용 대상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이므로 FDA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길 권함

결론

-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이며,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는 한국임

Ⅲ 시사점

- 미국 수출 물품의 경우 한-미 FTA와 같이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의 특혜원산지 기준과 제301조, 제 232조, IEEPA 등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상이하여 이중 원산지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혜원산지뿐만 아닌 비특혜원산지 목적의 원산지 관리도 필요함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50768 (2025.07.28.), <https://rulings.cbp.gov/ruling/N350768>
- CBP Ruling NY N348683 (2025.06.05.), <https://rulings.cbp.gov/ruling/N348683>
- CBP Ruling NY N326044 (2022.06.08.), <https://rulings.cbp.gov/ruling/N326044>
- CBP Ruling NY N308973 (2020.02.24.), <https://rulings.cbp.gov/ruling/N308973>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HTSUS(19 U.S.C § 1202) GN
- 33(o)/chapter 20/1, <https://hts.usitc.gov/>

# ORIGIN CASE

Vol. 5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